

- 총평 -

2015 지방직 행정법 총론 시험의 난이도는 중, 상 정도의 출제 수준이었다. 국가직 보다는 어려웠고 서울시와는 비슷한 정도로 출제되었다. 판례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13문제 정도, 조문을 묻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이론을 묻는 문제는 3문제 정도이다. 난해한 문제는 조문 3문제에서 출제되었다. 행정조사기본법(제6번)의 문제와 정보공개(제9번) 문제, 법령공포(제20번)에 관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 85점 정도의 점수이면 만족할 만한 점수라고 볼 수 있다. 기출문제와 판례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 한번쯤 언급되었던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았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동법 제12조). ① 동법 제7조. ② 동법 제15조. ④ 동법 제16조.

2.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하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2두5948).

- ②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6.12, 2006두16328).
- ③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3.09.14, 92누4611)
- ④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6.5.31, 95누10617)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제출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해설] 정답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①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라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99두5443). ②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5.17, 2000두8912). ④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에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8.6.12, 2007두1767).

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 정답 ①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건축도급계약은 사법관계이므로 공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판례는 부작위의무 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의 법적 근거를 도출할 수 없고 별도의 작위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6.28, 96누4374). ③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집행 실행 여부에 대하여 법률문언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보는 견해와 공익을 해하는 경우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기속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재량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1차 계고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제2·3차 계고가 행하여진 경우 반복된 계고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한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계고만이 처분이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0.2.22, 98두4665).

5.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7.27, 99두2970). ① 법령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처분법규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4.12.24, 2003두15195). ③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예방적 부작위소송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7.3.24, 86누182).

6.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이 경우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동법 제22조 제1항 ③ 동법 제28조 제1항 ④ 동법 제5조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법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 제2항). ③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건의 심의·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7항). ④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대판 2011.06.23.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8.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지방경찰청
- ② 서울지방경찰청장
- ③ 종로경찰서
- ④ 종로경찰서장

[해설] 정답 ④ 행정권한을 내부위임을 한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행정청이 하여야 한다. 하지만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확인소송은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4.8.12. 94누2763).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권한을 잘못 행사한 종로경찰서장이 피고가 된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④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 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하여는 공개정보고 하고 있다. 제6호는 비공개 정보이지만 각 목은 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내용이다. ① 동법 제17조.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한 ‘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되며, 그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②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2.7.5. 2010다72076). ①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그 효력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평가하고 있다(대판 2001.3.9. 99두5207).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7.10.12, 2006두14476).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12.24, 99두5658).

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 ④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별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④ 행정법규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이는 처벌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므로 과별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통고처분은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5.11, 2006도1993). ③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권자는 검찰에게 고발하여 정식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③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 ①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부담부행정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는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종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③ 원칙적으로 사후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행위 당시에 유보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관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다만 판례는 여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④ 부담의 위법여부는 일반 행정행위와 같이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처분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04.3.18, 2001두8254). ② 부관 중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에 한정되므로 사용, 수익 허가기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쟁송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6.15, 99두509).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이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1985.1.22, 84누647).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범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2.7.27, 81누174).

14.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청에 의한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같이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정답 ④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1.1.20, 2010두14954 전합).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판 2003. 2.14, 2001두7015). ③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다른 법률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5.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③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정답 ③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2.03.29, 2011두26886). ①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대판 2010.6.25, 2007두12514 전합). ② 행정심판 재결은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며,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甲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1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89.02.14, 88누1363). ①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말한다)·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동법 제6조 제3항). ③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④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1.07.27. 99두5092)

17. 행정행위의 하자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
- ②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한 승인 등 처분
-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 ④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 부과처분

[해설] 정답 ④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4.11.26, 2003두2403).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판 2001.2.23, 2000다68924). ②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처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6.30, 2005두14363).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결정
- ㄴ.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 ㄷ.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
- ㄹ.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ㅁ.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ㅂ.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ㅅ.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ㅁ, ㅂ
- ③ ㄴ, ㄹ, ㅁ, ㅅ
- ④ ㄷ, ㅁ, ㅂ, ㅅ

[해설] 정답 ②
 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대판 2010.2.25. 2009다98447).
 ③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면허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8.1.31, 2005두8269).

- ㉔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3.3.23, 91누8968).
- ㉕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5.17, 2001두10578).
- ㉖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7두1316)
- ㉗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13.1.16, 2010두22856).
- ㉘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은 강학상 확약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5.1.20, 94누6529).

19.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 ④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정답 ②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체납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2.6.28, 2001두1925).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0.28, 92누9463).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대판 2000.2.25, 99다54332). ④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06.14. 2004두619)

20. 행정법령의 공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